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. 8. 14 선고 2019가단678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대한 승낙
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

담당변호사 김대현

피고1. 국민건강보험공단

2. 신용보증기금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8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B 답 1,537m²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. 5. 16. 접수
제96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항성욱

별지

1) 원고는 청구취지에 등기말소를 구하는 부동산을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,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착오 누락임이 명백하다.